

「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11월 3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9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32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11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문화관광과장 유동근)

가. 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명시된 절차 및 방법을 따라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여 상위법을 따르고, 보다 나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변경하여, 캠핑장 운영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안 제2조(적용대상) 개정
 - 캠핑장 홈페이지 및 안내표지판 등에 계방산 오토캠핑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, 계방산이 노동계곡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므로 관리·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“노동리 노동계곡 오토캠핑장”을 “계방산 오토캠핑장”으로 명칭 변경
- 조례안 제7조제1항(수탁자의 선정) 단서 삭제
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제2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

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계약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, 조례에서 수탁 계약방법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“캠핑장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.”는 단서 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-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홍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명칭으로 캠핑장 명칭을 변경하고, 상위법령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”를 “평창군 캠핑장 관리 및 운영
조례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노동리 노동계곡”을 “계방산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